

## 부천시금형산업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1. 3. 5

나. 제출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2001. 3. 5.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8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01. 3. 9)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가. 제안이유

- 금형산업을 부천시 지역특화산업으로 정하여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과 부천시를 금형산업의 거점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금형산업지원정책을 자문할 기구로 부천시금형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금형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과 지원시설물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금형관련 연구기관·단체·조합·법인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부천시 공유재산의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최소비용인 당해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하고 일할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시장이 금형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운영하거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금형산업 발전방안 협의를 위하여 부천시금형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발전방안을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 협의회 구성은 회장, 부회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구성요건 및 해촉, 임기, 임무, 협의회 개최시기를 규정하고 방향설정과 의제발굴을 위하여 5~8인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내지 제13조 및 제15조)
- 필요시 협의회에서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 금형산업 업체 현황은?	○ 870개 업체로 전체 사업의 10%를 차지, 부품산업과 연결됩니다.
○ 협의회 구성인원이 너무 많지 않은지?	○ 구성은 관련대학 교수 4, 관련업체 8, 전문가 4, 기타 4,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회계사로 구성됩니다.
○ 대부료율을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는 10/1000으로 하는 이유는?	○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거 10/1000으로 하며, 법적허용 최소한으로 한 것입니다.
○ 지역특화사업이 상위법에 저촉은 없는지?	○ 상위법적근거 없습니다.
○ 부품산업이 부가가치가 높는데 업체수는 몇 명 이상 업체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 1인 이상 업체를 조사한 것이며, 5인 이상 업체는 190개 업체로 경기도의 33%, 수도권의 19%를 차지합니다.

○ 열처리 업체도 연관산업인데?

○ 오정기술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그 중에서 할애 센터유치, 금형학회 설치 및 유치계 획입니다.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6. 수정안 요지

○ 별 첨

7. 소수의견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금형산업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번호	관련 제443호
의결년월일	2001. 3. 14 (제85회)

제출년월일 : 2001. 3. 13

제 출 자 : 기획재정위원장

1. 수정이유

- 금형 및 연관사업을 부천시의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 지원하고자 하는 안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때, 시공유재산대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 공유재산 대부 또는 사용허가신청서로 하고
- 협의회 구성에서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나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당연직 위원을 늘리고 위촉직을 줄이며 시의원을 2인으로 한다.
- 위원의 수당은 수당과 여비로 되어 있으나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일비와 여비로 한다.

2. 주요골자

- 시 공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공유재산대부신청서"에서 "시공유재산 대부 또는 사용허가신청서"로 한다.(안 제5조제2항)
- 협의회 구성원 중 당연직 위원을 "3인"에서 "4인"으로 하고, "시의원 1인"을 "시의원 2인"으로 하

며, 위촉직원은 “22인” 이내로 하며를 “23인” 이내로 한다.(안 제9조제3항, 제4항)

- 위원의 수당은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일비와 여비”로 한다.(안 제17조)

### 부천시금형산업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천시금형산업지원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2항 중 “시공유재산대부신청서”를 “시공유재산대부신청서 또는 사용허가신청서”로 한다.

안 제9조제3항 중 “3인 이내”를 “4인 이내”로 하고, “시의원 1인”을 “시의원 2인”으로 한다.

안 제9조제4항 중 “22인 이내”를 “21인 이내”로 한다.

안 제17조 중 “수당과”를 “일비와”로 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 ①(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공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u>시공유재산대부신청서</u> 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생략)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 ①(제정안과 같음) ②..... ..... ..... <u>시공유재산대부신청서 또는 사용허가신청서</u> 를.....
제9조(협의회 구성) ①(생략) ②(생략)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u>3인 이내</u> 로 하며 <u>시의원 1인</u> , 부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및 시의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위촉직위원은 <u>22인 이내</u> 로 하며 금형산업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학계·업계·연구기관 등의 전문가와 변호사·회계사·변리사·세무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9조(협의회 구성) ①(제정안과 같음) ②(제정안과 같음) ③..... ..... <u>4인 이내</u> ..... <u>시의원 2인</u> , ..... ④..... <u>21인 이내</u> .....
제17조(위원의 수당)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u>수당과</u>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수당) ..... ..... ..... <u>일비와</u> .....

### 부천시금형산업지원조례안

의안번호	제443호
의결년월일	2001. 3. 14 (제85회)

제출년월일 : 2001. 3. 5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금형산업을 부천시 지역특화산업으로 정하여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과 부천시를 금형산업의 거점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금형산업지원정책을 자문할 기구로 부천시금형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주요골자

- 금형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과 지원시설물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금형관련 연구기관·단체·조합·법인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부천시 공유재산의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최소비용인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하고 일할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시장이 금형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운영하거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금형산업 발전방안 협의를 위하여 부천시금형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발전방안을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 협의회 구성은 회장, 부회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구성요건 및 해촉, 임기, 임무, 협의회 개최시기를 규정하고 방향설정과 의제발굴을 위하여 5~8인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내지 제13조 및 제15조)
- 필요시 협의회에서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부천시조례 제 호

### 부천시금형산업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에 집중화되어 있는 금형 및 연관산업(이하 “금형산업”이라 한다)을 부천시의 지역특화산업으로 정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과 부천시를 국내·외 금형산업의 거점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금형산업육성정책자문기구로 부천시금형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칭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형”이라 함은 동일규격의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모체가 되는 틀을 말한다.
2. “연관산업”이라 함은 금형제작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반 산업활동을 말한다.
3. “지역특화산업”이라 함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시장은 금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연구기관·조합·기업체 유치 및 운영
2. 시험검사·설계지원·장비활용 등을 위한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3. 대학 및 연구기관 보유 시험검사·설계·측정설비 등의 이용에 관한 사항
4. 금형 기술자 및 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5. 수출 주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업체·대학·연구소·부천시(이하 "산·학·연·관"이라 한다) 공동기술개발 사업
6. 금형 및 금형관련 산업의 단지조성 사업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시설물의 설치) 시장은 금형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1. 금형관련 연구기관·조합의 청사 및 공용의 검사실·시험실·측정실
2. 기술자 및 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장
3. 보관창고 및 전시실, 세미나실 등의 부대시설
4. 기타 금형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에서 협의된 시설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 ①시장은 금형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부천시 공유재산(이하 "시 공유재산"이라 한다)을 금형관련 연구기관·단체·조합·법인(이하 "관련기관"이라 한다)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공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유재산대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관련기관이 시 공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하되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제6조(시설물의 운영) ①시장은 제4조에 규정된 시설물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금형산업을 부천시의 특화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방안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둔다.

②시장은 금형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협의회에 회부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금형산업 육성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금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연구기관·조합·기업체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
3. 시험검사·설계지원·장비활용 등을 위한 부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대학 및 연구기관 보유 시험검사·설계·측정설비 활용에 관한 사항

- 5. 금형 기술자 및 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장 설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
- 6. 산·학·연·관 공동기술개발 지원과 수출주력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7. 금형 및 금형관련 산업의 단지조성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 8. 금형부품의 신뢰성 평가 및 인증에 관한 사항
- 9.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3인 이내로 하며 시의원 1인, 부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및 시의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④위촉직 위원은 22인 이내로 하며 금형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업계·연구기관 등의 전문가와 변호사·회계사·변리사·세무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또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1조(회장 등의 직무) ①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이 사고가 있는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협의회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장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3조(소위원회) ①협의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5인 이상 8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③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처리와 금형산업 발전방향 설정 등의 의제를 발굴하여 위원회에 상정하는 임무를 지닌다.

제14조(의견청취) 협의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 1. 관계 부서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제출
- 2.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 3. 기타 협의회가 필요로 하는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개진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 2.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 5. 기타 위촉원인이 소멸된 경우

제16조(간사 및 서기) ①협의회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

장이,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간사는 협회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7조(위원의 수당) 협회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